

조현증 특허법 객관식문제집 정오표

순번	쪽	문제 번호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1	591	23	(마) 특허법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침해죄, 허위표시죄, 거짓행위죄뿐이다.	(마) 특허법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침해죄, 허위표시죄, 거짓행위죄, <u>비밀취급명령 등 위반죄</u> 뿐이다.	개정법 반영
			(마) 101 양벌규정은 침해죄, 허위표시죄 및 거짓행위죄에만 적용된다.	(마) 101 양벌규정은 침해죄, 허위표시죄, 거짓행위죄 <u>및 비밀취급명령 등 위반죄</u> 에만 적용된다(법 제230조).	
2	876	09	해설 ① 시행규칙 제106조의 4 (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. 대표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때 대표자는 시행규칙 제106조의4에 따라 법 제19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 중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할 수 있다. 만약 甲이 재외자라면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지 않으니 乙을 대표자로 할 수 있고, 甲이 재내자라면 2호에 해당하고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니 甲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.)	해설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. 대표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때 대표자는 시행규칙 제106조의4에 따라 법 제19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 중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할 수 있다. 만약 甲이 재외자라면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지 않으니 乙을 대표자로 할 수 있고, 甲이 재내자라면 2호에 해당하고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니 甲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.	해설 오기 수정
3	419	03	② 상기 ①의 경우 특허출원이 <u>분할출원</u> ,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,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결정을 한 경우,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 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보류신청을 할 수 없다.	②상기 ①의 경우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,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,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보류신청을 할 수 없다.	시행규칙 개정법 반영